

[]제조소
위험물 []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서
[]취급소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처리기간	즉시	
지위승계인	성명			생년월일				
	주소			(전화번호:)				
전 설치자	성명							
	주소			(전화번호:)				
제 조 소 등	설치장소							
	제 조 소 등의 구분			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				
	설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							
	년			월	일	/	제 호	
	설치완공검사 월일 및 검사번호							
년			월	일	/	제 호		
위험물의 유별, 품명(지정수량), 최대수량			지정수량의 배수				배	
양도 또는 인도의 원인				지위승계 연월일				년 월 일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
신고인

(전화번호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소방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.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25 제5호에 따른 금액
------	--	--

작성방법

- 1.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,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하고,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.
- 2. 품명(지정수량)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()안에 해당하는 지정 수량을 적습니다.
- 3. 음영으로 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